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선임·사임 보고서

문서번호 : 2020-A15

2020. 08. 25.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사본수신 :

제 목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의 선임·사임 보고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3. 임원의 선임·사임보고

아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 주 옥



본점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23, 1층(삼성동)

작 성 자 : 박경아 (과장)

전화번호 : 02-6959-1245

<붙임 3>

임원의 선임·사임보고

※ 법 제418조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해임(사임)시 작성한다.

가-1. 임원의 선임 현황

성 명	오동기		
직 위	이사		
상임여부	상임	감사위원 여부	부
주민등록번호	710601-*****		
학 력 ¹⁾	1995.03~1997.02	광주과학기술원(생명과학)	
	1990.03~1995.02	서울대학교(임산공학)	
	1987.03~1990.02	명신고등학교	
최근 5년간 경력 ²⁾³⁾	2019.10~2020.현재	아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이사	
	2019.08~2019.09	비전자산운용 이사	
	2016.06~2019.07	주식회사 유아이 전무	
	2013.09~2014.12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이사	
선임일(최초선임일 ⁴⁾)	최초선임	연임여부	
임기만료일	2023.08.11		
비고			
<p>■ 첨부서류 임원의 선임(대표이사 변경 포함)등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p>			

가-2. 임원의 선임 현황

성 명	김상우		
직 위	이사		
상임여부	상임	감사위원 여부	부
주민등록번호	610824-*****		
학 력 ¹⁾	2018.03~2019.현재 1978.03~1981.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영문과) 선린상업고등학교(상과)	
최근 5년간 경력 ²⁾³⁾	2019.09.02.~현재 2009.12.~2014.06	아리자산운용 준법감시 이사 씨티은행 영업추진부(부부장)	
선임일(최초선임일 ⁴⁾)	최초선임	연임여부	
임기만료일	2023.08.11		
비고			
<p>■ 첨부서류</p> <p>임원의 선임(대표이사 변경 포함)등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p>			

나-1. 임원의 해임(사임) 현황

성명	변진영		
상임여부	상임	감사위원 여부	
주민등록번호	700413-*****		
해임(사임)일자	2020년 08월 17일		
해임(사임)사유	개인사유(본인의사)		
비고			
<p>■ 첨부서류</p> <p>임원의 해임을 결의한 의사록 사본 1부</p>			

나-2. 임원의 해임(사임) 현황

성 명	오경석		
상임여부	상임	감사위원 여부	
주민등록번호	700315-*****		
해임(사임)일자	2020년 08월 17일		
해임(사임)사유	개인사유(본인의사)		
비고			
<p>■ 첨부서류</p> <p>임원의 해임을 결의한 의사록 사본 1부</p>			

다.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¹⁾	오동기	직 위	이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비전자산운 용(주) 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법,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또는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사항 없음		
5.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6. 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8.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p> <p>9.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10.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p> <p>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제8호가목 및 제9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1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 자</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중 합 의 견

오동기는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 2제1항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08월 25일

아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마주옥 (인)



다.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¹⁾	김상우	직 위	이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씨티은행영 업추진부 부부장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법,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또는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사항 없음		
5.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6. 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8.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p> <p>9.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10.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p> <p>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제8호가목 및 제9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1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 자</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총 합 의 견</p> <p>오동기는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사업규정 제7-41조의 2제1항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08월 25일</p> <p style="text-align: right;">아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마주옥 (인)</p> 		

라. 변동 후 임원 명단

성명	직위	상임여부	감사위원 여부	연임 여부	최초 선임일	최직근 선임일	임기만료일
마주옥	대표이사	상임	해당없음	신규선임	20.03.17	20.03.17	2023.03
오동기	사내이사	상임	해당없음	신규선임	20.08.12	20.08.12	2023.08
김상우	사내이사	상임	해당없음	신규선임	20.08.12	20.08.12	2023.08
오대호	감사	비상임	해당없음	신규선임	19.10.18	19.10.18	2023.10